

# 수입선적서류 도착통지

# 수입신용장 조건불일치에 관한 조회

귀하  
(FAX NO. \_\_\_\_\_ )

L/C NO(REF NO)	
선적 서류 금액	

귀하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된 위 수입신용장에 따른 선적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통지하오니 \_\_\_\_\_ 까지  
결제 또는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귀하가 \_\_\_\_\_ 와(과) 계약한  D/P  D/A 수입선적서류가 위와 같이 도착되었음을 통지하오니 동 서류 및  
어음의 결제 또는 인수여부를 조속한 시일내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위 선적서류 중 수입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는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에 대한 귀하의 동의여부를  
이 조회장 발송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아래 양식을 절취하여 FAX로 당점앞 회보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한내에 회보가  
없을시에는 저희은행이 매입, 지급, 인수에 대한 동의 또는 거절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.

불일치 내용 :

[은행 사용란] 통보 내역	
-------------------	--

년 월 일

KEB하나은행 지점

절 취 선

# 수입신용장 조건불일치 동의/거절통지서

# 선적서류 수령증 / 수입화물대도(T/R) 신청서

KEB하나은행 지점 앞  
(FAX NO. \_\_\_\_\_ )

신용장 번호	
선적 서류 금액	

귀행이 조회한 위 선적서류의 불일치 내용에 대하여 수입 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매입·지급·인수에  동의  거절 하오니 필요한 조치  
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말미암은 비용과 손해가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 본인이 부담하겠습니다.

본인은 상기 신용장 등에 의하여 도착된 수입화물대도(T/R) 신청함에 있어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, 따로 제출한 외국환거래약정서  
및 양도담보계약서의 모든 조항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.

본인은 위 선적서류를 정히 수령하며, 동 선적서류의 수령과 관련하여 수입환어음 또는 선적서류의 대금과 귀행이 정한 수수료(율)  
로 계산한 은행수수료 및 신용장 거래에 따라 발생한 제비용과 이자를 귀행이 청구하는대로 귀행에 지급함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본 인

인	인감대조

주 소

